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5
----------	-----

2025. 8. 29.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환경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도시환경국장 최원석 )

공유재산(동 주민센터 8개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대상시설

나.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시기 및 운영 방법

다.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부지 사용계획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비예산(민간투자)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주현 )

### 가. 제안 취지 및 배경

#### ○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

- 2005년 정부는 미래 자동차산업은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가 선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2020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기자동차의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입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구청장으로 변경함.
- 2025년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진작시키려는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자동차’로 정함.<sup>1)</sup>
- 무공해차 보급 정책 관련 정부 추진과제는 ①성능·안전·가격이 뛰어난 전기자동차 보급, ②빠르고 안전·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 ③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고,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목표가 누적 49만기로 제시됨.<sup>2)</sup>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함. 상위법령에 따른 충전시설의 종류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되는데, 위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충전속도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급·차감 요건을 강화하여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1) 환경부, 2025. 1.,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https://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291122&fileSeq=2>

2) 환경부, 2025. 3., <202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https://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215204&fileSeq=6>

유도하는 경향이 보임.

####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의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이 내용인 조례를 제·개정하였음.
-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목표는 40만대 이상 충전가능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8만 5,304대 중 약 17%인 1만 4,117대가 강남구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치구 1위인 강남구와 2위인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7천대 정도 차이남.

### 나. 검토 내용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및 필요성

- 2025년 현재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상위법령에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업체별·모델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충전 소요시간이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정도임.
- 예상되는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각 주차구역별 3.3㎡ 이내로 확인되며, 설치 예정 충전시설 수량은 부서에서 제공한 다음의 도표와 같음.

연번	시설위치 (주민센터)	설치기기 (교체계획)	공유재산 사용면적 (㎡)	공시지가 (천원/㎡)	요율 (%)	경감률 (%)	연간임대료 (원)	
총계		8	19.80	-			1,395,993	
1	논현1동	1	(완속→완속)	2.20	11,880	2.5%	80%	130,680
2	논현2동	1		2.25	10,460			117,675
3	압구정동	1		2.60	24,400			317,200
4	대치4동	1	(완속→급속)	3.00	11,210			168,150
5	역삼2동	1		2.25	15,880			178,650
6	세곡동	1		2.25	3,404			38,295
7	청담동	1		2.25	26,530			298,463
8	일원본동	1	(급속→급속)	3.00	9,792			146,880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동주민센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동주민센터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반시설로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속하므로 이 동주민센터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투자자로 설치하는 경우

- 부서에서 제시한 설치 사업자 공개 모집 요건은 ①환경부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 규정하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②제안서 및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자임.
- 올해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하다고 보임.

○ 공유재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제 조건

● 공유재산 임대 여부 확인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에

게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를 한다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조례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 여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사항 심의

(1) 심의 전

- 심의에 앞서 해당 지역 또는 시설물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및 (추정) 이용자 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요, 해당 부지에 대한 접근성(전부/일부개방)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공유재산 임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심의 과정 중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영구축조물) 설치 필요성, 설치 대상 부지 위치 및 면적, 설치 추진 계획, 설치 전제 조건(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사업자가 협약을 미이행하는 경우 대응 방안 등을 미리 심도있게 논의하여 점검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계획과 관련해 협약서 등에 명시할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거쳤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임.

● 구의회 동의 요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내역을 의회에 보고)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완료된 점검 사항들을 정리하여 ①해당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필요성, ②설치 대상 부지인 공유재산의 임대 여부, ③사업자를 통한 영구시설물 축조 이행의 전제 조건 등을 요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보다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 그렇게 한다면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영구축조물 설치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부연하는 정도로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확인 절차 등 (권장)

### < 충전시설 설치 절차 및 시기 >



### 다. 종합 의견

####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적합성

- 각 동주민센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여진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해당하고, 법정 하한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일정한 수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위치 적합성은 갖추었다고 보임.

○ 탄소배출 감축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 2025년 6월 환경부에 제출된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가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됨.

<강남구 탄소배출 감축 실적 달성 현황>

사업 명칭	소관부서	실적달성도	예산집행률	종합점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환경과	40% (미흡)	비예산 -	20점 만점 중 5점 (미흡)

- 이 때 이미 계획상 민간사업자 모집을 통하여 비예산(민간투자) 집행 예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번 동의안을 통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의 실적 달성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

- 일부 절차 미비점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부족한 신규 사업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이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전에 [표준 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공유하는 등 부서에서 보완을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보임.
- 다만,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절차적 안정성도 보완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자 모집 단계에서 선정기준에 △충전 방해행위 감지 기술 보유 여부 및 대응 방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 △연구 축조물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처 방안 등도 반영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점검 사항>

- 충전시설 설치 근거
- 충전시설 설치 위치
-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 충전시설 운영 및 관리
  - 협약기간, 충전요금, 분쟁방지, 해약요건
  - 충전 방해행위 감지 및 대응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의 연계 방안
  -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방안 등

- 또한, 사업 추진에 따라 각 동주민센터의 시설물 관리계획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잘 관리하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있음.

(1) 시설물 관리계획 현행화

- 충전시설 설치에 따라 시설물 관리계획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제2항)

**<시설물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시 다음 각 사항을 시설물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제2항)

(2) 동주민센터별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수 관리

- 각 동주민센터의 주차장마다 총 주차대수 대비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충전시설 수를 표기하여 관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면 청사 총 주차대수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설치할 것인지 연도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관계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59호]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5(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1.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86호]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법 시행령 제18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의 설치 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

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차장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2호]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7.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773호]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공업무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1.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83호]

제11조의4(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대수가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대수는 10대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8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 참고 자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현황 (기 설치)

(2025. 7. 기준)

###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동	시설명	주소
도곡동	강남세브란스	언주로211(도곡동146-92)
논현동	LH서울지사	선릉로121길 12(논현동254)
수서동	수서역 공영주차장	수서동 735
삼성동	GS칼텍스 삼성로점	삼성로563(삼성동119-18)
개포동	개포동공원 공영주차장	개포로509(개포동182-1)
일원동	탄천제2호 공영주차장	일원동4-49
역삼동	서울 노보텔 강남	봉은사로130(역삼동603)
대치동	현대블루핸즈 대치북부점	선릉로336(대치동921-1)
대치동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	영동대로417(대치동948)
대치동	학여울역 공영주차장	남부순환로3104(대치동514)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대치점	삼성로156(대치동509)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호	565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환 경 과

##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동 주민센터 8개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대상시설

○ 8개동 주민센터 노후 전기차 충전기 교체 (동별 각 1대)

[단위 : 기]

연번	주민센터명	현재 설치내역		교체 희망내역		충전시설소유자
		구분 <sup>3)</sup>	수량	구분	수량 <sup>4)</sup>	
1	논현1동	완속	1	완속	1	주민센터
2	논현2동		1	급속	1	
3	압구정동		1		1	
4	대치4동		1		1	
5	역삼2동		1		1	
6	세곡동		1		1	
7	청담동		1		1	
8	일원본동	급속	1		1	
계		급속1, 완속7		급속7, 완속1		

3) 구분 : 급속(40kW 이상), 완속(40kW 미만)

4) 수량 : 대상시설 및 충전기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주요내용

- 사업명 : 동 주민센터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설치시기 : 2025년 10월
- 소요예산 : 비예산(민간투자)
- 사업규모 : 충전기 8기 설치(동 주민센터 8개소: 완속 1기, 급속 7기)
- 선정방법 : 설치 사업자 공개 모집(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 자격요건 : 환경부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신청 자격<sup>5)</sup>을 충족할 것
- 운영방법 :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무상설치 및 운영·관리
  - 운영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 이행조건 : 사업 종료 시 자진철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 4. 부지사용계획

연번	시설명 (주민센터)	사용면적 <sup>6)</sup> ( m <sup>2</sup> )	공시지가 <sup>7)</sup> (천원/m <sup>2</sup> )	요율	경감률	임대료 (원/년)
총계		19.8	-			1,395,993
1	논현1동	2.20	11,880	2.5%	80%	130,680
2	논현2동	2.25	10,460			117,675
3	압구정동	2.60	24,400			317,200
4	대치4동	3.00	11,210			168,150
5	역삼2동	2.25	15,880			178,650
6	세곡동	2.25	3,404			38,295
7	청담동	2.25	26,530			298,463
8	일원본동	3.00	9,792			146,880

5)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 1.6(OCPP 1.6) 인증을 완료한 자 등

6) 사용면적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추정된 것으로 최종 완공 후 변경될 수 있음

7) 2025년 공시지가 : 기준일(1월 1일), 공시일(4월 30일)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5. 추진경과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5년 제3차, 4. 1.(화)]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교체 대상 시설 현장 점검 및 실사 : 2025. 8. ~ 9.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사용(대부)료 감면 건) : 2025. 9.
  - ▶ 2025년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 2025. 10. 21.(화)
- 충전기 교체 : 2025. 10. ~ 12.

## 6. 법적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붙임: 강남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협약서(초안) 1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강남구와 0000(이하 “공급자”라 하며 총칭하여 “당사자”라 한다)는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공급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강남구가 제공하는 장소(이하 “본건부지”)에 공급자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신의·성실로 협력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원칙)

1. 강남구와 공급자는 신의·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남구”에서 제공한 부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관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강남구”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 (협약기간)

1. 본 협약에 의한 부지사용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조건은 연장 직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4조 (복구의무)

1. 협약 유효기간 전 “강남구”의 철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에 충전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단, 협약 만료 후에 철거시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부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5년 이전이라도 제10조에 따르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여 공급자는 충전설비를 철

부지 사용기간	공급자 부담 비율	부지소유자 부담 비율
1년 미만	-	100%
1년 이상 ~ 2년 미만	20%	80%
2년 이상 ~ 3년 미만	40%	60%
3년 이상 ~ 4년 미만	60%	40%
4년 이상 ~ 5년 미만	80%	20%
5년 이상	100%	-

거하고 본건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2. 공급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강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지 제공)**

1. 강남구는 본건 부지를 공급자에게 유상(임대)으로 제공하며, 본건 부지 현황은 붙임 충전시설 설치 대상목록과 같다.
2. 공급자는 본건 부지를 강남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 강남구는 충전소 개방 시간을 가급적 24시간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폐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충전소 개방 시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부지 임대료)**

1. 강남구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본건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
2. 부지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3. 부지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접수, 사용 허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한다.

**【 임대료 산정 】**

□ 임대료(년) = 부지면적(m<sup>2</sup>) × 개별공시지가 × 25/1000 × (1-80/100)

※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제7조 (충전요금)**

1. 충전요금 설정권한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장의 공용 충전 서비스 요금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사전에 강남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정부정책 변경, 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충전 전력요금 변경 등 충전요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강남구와 협의 후 충전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 (역할분담)

각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 1. 강남구의 역할

- 가. “강남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유 및 공유재산의임대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기반하여 시행한다.
- 나. “강남구”는 충전기의 훼손 등 기타 외관상 흠결을 발견한 경우,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 다. “강남구”는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공급자”의 회원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출입,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등을 협조한다.
- 라. “강남구”가 충전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강남구”는 설치부지 내에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부지 내로 진입을 허용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2. 공급자의 역할

- 가. “공급자”는 전기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기(이하“충전기”)를 본 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충전기 및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또한, 충전소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충전기 운영과 관련한 상황을 강남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 나. “공급자”는 “강남구”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설치비용(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등) 일체를 부담하며, 충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전기료 및 충전기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다. “공급자”는 “강남구”의 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공간에 대해서 관련 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된 법에 따라 운영한다.

### 제9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다른 당사자(이하“정보제공 당사자”라 함)의 업무상 또는 기술, 영업정보 등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 등을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가. 정보제공 당시 “정보제공 당사자”가 이미 알고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 나.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 당사자”이외의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다.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 라. 외부자문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공개 당사자는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목적 범위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설치된 전기충전기의 충전량(전기량, 차량대수, 기타 회원정보 등)을 월 단위로 “강남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단, 개인정보의 경우 일부만 정보 제공한다.
- 3.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해제,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 4.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 1. “공급자”의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비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급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화재,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강남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원의 과실로 손상되었을 경우 “공급자”와 회원간에 협의하여 보상관계를 결정한다.
- 2. “공급자”는 대부계약 기간 중 전기차 충전소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직원 등에게 화재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강남구”는 영업상의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조치(재산관리)에 대해 필요시 행정지원을 하며, “공급자”는 “강남구”의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상 지위 등의 양도, 처분 금지)**

“강남구”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 상의 지위 및 협약에 따른 개별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 제12조 (협약의 효력)

1. 이 협약은 “강남구”와 “공급자” 대표자의 날인(또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강남구”와 “공급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최대 5회)한다.
3. 이 협약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4. “강남구” 또는 “공급자” 일방이 이 협약서의 내용 또는 이 협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 (협약의 해지)

1. “강남구” 또는 “공급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최고 절차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즉시 본 협약에 근거한 다른 약정을 일괄하여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처분 기타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 나.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경우
  - 다. 워크아웃, 회생, 파산 절차의 신청 또는 그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 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조세채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 마.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바.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급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장난 충전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경우
2. “강남구” 및 “공급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철거 비용 전액을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강남구”의 공공사업 시행 혹은 기타의 사유로 5년 이내 철거 요청시, 철거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이전한다.
3. “강남구”가 충전기 이전 요구 시 이전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이전한다. 다만, 건축물의 증축 등 이전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이전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강남구”와 “공급자”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1. 본 협약상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특히, “공급자”는 목적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전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남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 등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강남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공급자”는 공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강남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의 해제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관례·관습 등 일반적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강남구”와 “공급자” 쌍방이 날인(또는 서명) 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강남구**

**공급자**

강남구청장    조성명 (인)

공급자 대표 0000 (인)

**[붙임] 충전시설 설치 대상 목록**

연번	시설명(주민센터)	주소	설치충전기 수		비고
			급속	완속	
1	논현1동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		1	
2	논현2동	서울 강남구 학동로43길 17	1		
3	압구정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1		
4	대치4동	서울 강남구 도곡로77길 23	1		
5	역삼2동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5	1		
6	세곡동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86	1		
7	청담동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1		
8	일원본동	서울 강남구 광평로 126	1		
합계			7	1	